

#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403
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10. 27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의 자연학습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에 대하여 『일 과 성과』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학습의 능률제고와,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민간위탁 대상

-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관리(자연휴양림 조성·관리 제외)

### 나. 부지면적 : 14,503m<sup>2</sup>

### 다. 위탁 주요시설

- 자연학습시설 : 철근콘크리트 2,355.29m<sup>2</sup>(연면적 3,956.55m<sup>2</sup>)
  - ┌ 학습관(대강당, 중회의실, 천문대, 식당, 휴게실, 관리실)
  - └ 자연환경전시관(자연생태관, 화석·광석관, 공룡관, 선사시대관)
  - └ 생활관(15실 240명), 새와 동물의 집, 학습농장, 곤충생태학습장, 경비실 등

## 3. 참고사항 (관련법령)

가.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제8조(위탁관리)

나.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(민간위탁대상사무 등)

## 4. 민간위탁 대상

### 가. 학습원 현황

- 위 치 :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460-2번지
  - 설 치 : 1997. 08. 26(조례 제2668호) / 휴양림지정 '91. 5. 15
  - 면 적 : 14,503m<sup>2</sup>(휴양림면적 183ha 제외)
  - 인력 현황
    - 정 원 : **15명**(일반직 12명, 기능직 3명) / 원장 : 녹지5급
    -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: **13명**(청원경찰 3 / 단순노무 9 / 환경미화원 1)
- ※ 현원 일반직 7급 중 3명은 전임계약(다급)임

### 나. 위탁 추진 주요 내용

- 위탁사무 : 만인산푸른학습원 학습시설 운영 · 관리 전반
  - 자연생태학습, 산림체험 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
-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방법 : 공개모집 위탁협약에 의함
- 수탁기관 : 자연환경 교육과 관련 있는 대전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(단체)
- 학습원 관리 · 운영인력 : 재 배치 및 수탁기관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

### 다. 위탁 제외 대상

- 자연휴양림 : **183ha**
  - ※ 자연휴양림 국유림 대부지(산림청 소관)로 위탁 불가 / 대부권자 회신
- 자연휴양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영관리

# 만인산푸른학습원 위탁시설 현황

구 분	시설명	구 조	면 적(m <sup>2</sup> )	비 고
계	7종	2층	3,956.55	대지 : 14,503m <sup>2</sup>
학습시설	관리실	철근콘크리트	821(7실)	사무실, 의무실, 숙직실
	학습실	"	852(6실)	강당, 자연전시실, 자료실
	생활관	"	468(23실)	교육생, 지도교관실, 식당, 샤워실, 휴게소
	전시관	"	395(1실)	
	천체관	"	211(1실)	
	경비실	목구조	18(1실)	
	기 타	철근콘크리트	1,209.55 (12실)	화장실, 홀, 복도

## 관계법령

### ○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

**제8조(위탁관리)**대전광역시장은 학습원 운영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.  
<개정 2008.01.04>

### ○ 대전광역시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 등)** ①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민간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 <개정 2007. 10. 05 조례 제3557호>

③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 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 동의의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7.10.05 조례 제3557호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